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•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476

제출년월일: 2009. 4. 27.

제 출 자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조직의 통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감경혜택을 부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휴양림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유료시설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을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명칭 변경함(안 제2조의2 제1항).
- 나. 시설사용료의 감경 대상자에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를 추가함(안 제6조의2).
- 다. 시설사용료를 일부조정함(안 별표 1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・구조문 대비표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• 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9. 4. 3. ~ 4. 13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 •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 ·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중 "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"을 "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"으로 한다.

제6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

별표 1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휴양림 시설사용료(제6조 관련)

2. 회의실

(단위 : 원)

시 설 별	규 모	사용요금	비고
회의실	181 m²	100,000	O 4시간 사용 기준
		200,000	O 1일 사용 기준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가		정	Ç	간	
제2조의2(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) ①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 소장(이하 "소장"이라 한다)은 휴양림 의 관리계획 및 숲체험학습 운영계획 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휴양림의 관리 계획은 3년마다, 숲체험 학습 운영계획 은 매년도 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 대전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(생략) 제6조의2(시설사용료의 감경) (생략) 1. ~ 7. (생략)					제2조의2(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) ①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					
< <u><</u> 신설> [별표 1]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(제6조 관련) 2. 세미나실 및 식당 (단위 : 원)				[별표 1]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(제6조 관련) 2. 회의실						
시 설 별	규 모	사용요금	비	고	시 설 별	규 모	사용요금	ь	ıl	고
세미나실	대형 (181㎡) 소형 (40㎡)	200,000	O 사용요금은 1회 3 ※ 추가 사용의 경우 추가징수 (이 경우 1시간 미			181 m²	100,000	O 4시간 사	용 기준	
식 당	75 m²	150,000	,	일 14:00부터다음날 기준이며, 사용시간 시 1일 사용료를 추가	회의실		200,000	0 1일 사용	기준	

관련법규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

제48조(설치) ①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자연학습, 산림체험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를 두고,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사무소를 설치한다.

제49조(소장)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0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- 1. 공원내 시설의 유지관리
- 2.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
- 3. 공원내 식물원·동물원의 관리운영
- 4. 공원미화에 관한 사항
- 5. 만인산자연휴양림 휴양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
- 6. 장태산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·운영
- 7. 산림자원 조성 및 육림관리
- 8.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

□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

제40조(하부조직) ①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과, 장태산자연휴양림사무소를 두다.

□ 참고 자료

○ 타 지역 자연 휴양림 및 기관의 회의실 대여 요금 현황

휴양림명 / 기관명	회의실 면 적	기 준 인 원	요금	사 용 시 간	비고
축 령 산 자연휴양림	231 m²	70명	100,000	09:00~18:00 (9시간)	
민주지산 자연휴양림	469 m²	180명	200,000	5시간	· 추가 1시간당 사용요금의 20% 징수
칠 갑 산 자연휴양림	35.54 m²	10명	50,000	1일	
· 숲 체 원	-	50명	120,000	4시간	· 빔프로젝트 요금 별도
효제전			250,000	1일	3만원(4시간), 7만원(1일)
대 전 역	126.72 m²	60명	50,000	1시간당	· 빔프로젝트, 냉·난방비, 노트북 대여료 별도
서 울 역	-	100명	70,000	1시간당	"